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나45747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나4574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가소935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정승환

변론 종결 2024. 9. 13.

판결 선고 2024. 11. 8.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가소9358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68,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경호

판사정상규

판사장성학